

감 사 원

통보(시정완료)

제 목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불복절차 등 불합리

소 관 기 관 행정안전부

조 치 기 관 행정안전부

내 용

1. 업무 개요

행정안전부는 2014년부터 독립세⁴⁶⁾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결정청구 등 불복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제103조의52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개인지방소득세와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근로자 등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지 않고 사업주 등이 특별징수⁴⁷⁾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도록 되어 있다.

46) 2013년까지는 국세청에 신고한 법인세 및 소득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가, 201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독립세로 전환하여 납세의무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

47)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 등이 원천징수하는 법인세 및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나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를 하여 불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위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 외국법인 등 특별징수만으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특별징수대상자는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경정청구로 과다징수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고 특별징수는 과세관청과 특별징수대상자간의 관계에서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이 아니므로⁴⁸⁾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등의 방법으로 이에 불복하여 원천세액의 과다징수 여부를 다툴 수도 없어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공제 등 증빙서류를 미쳐 제출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증빙서류를

48) 대법원은 2002. 11. 8.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원천징수세액의 환급결정을 구하는 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국가가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2001두8780 판결)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 등의 경우 과다징수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경정청구, 이의신청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

반면, 국세청은 2003. 12. 30.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을 신설하고, 2006. 12. 30. 개정을 거쳐 법인세 및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의 방법으로 원천징수 세액의 과다징수 여부를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절차 없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특별징수대상자가 개인 및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세액의 과다징수 여부를 다룰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 등에 특별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 이의신청 등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지방세법」 제97조 등을 개정하여 구 「지방세기본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18조 및 제119조 등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자에 대한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경정청구 등 불복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⁴⁹⁾ 하면서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특별징수대상자가 특별징수 세액의

49)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부칙 제13조(법률 제12153호, 2014. 1. 1.)에 2019년 말까지 개인 지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개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등 불복절차의 적용을 2019년 말까지 유예하고 있어 불복절차가 없음

과다징수 여부를 다룰 수 있는 불복절차는 「지방세기본법」 등에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대상자는 국세인 법인세·소득세 원천징수대상자와 달리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경정청구 등의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없고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방법으로만 특별징수 세액의 과다징수 여부를 다룰 수 밖에 없어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행정안전부는 감사결과의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이견을 표명하지 않으면서 향후 외국법인,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 특별징수만으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특별징수대상자가 특별징수 세액의 과다징수 여부를 다룰 수 있는 불복절차를 마련하여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2018년 12월 특별징수대상자에 대한 불복절차 조항을 신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4항)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시정완료)]